

제33회 임시회 목포시의회본회의회의록(제 1 차)

(오 전)

1. 일 자 : 1955(4288)년 3월 3일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의성립 :

1. 출석의원 : 15명

2. 불참의원 : 6명

3. 참석한 자치단체의 직원 및 각 과장, 각 주무자

4. 의사일정 :

1. 제32회 제3차, 4차 회의록 통과

2. 이충무공 동상 건립 후보지 유치에 관한 건의문 발송 경과보고

3. 군경원호회 목포시분회 운영에 관한 건의문 발송 경과보고

4. 사료 적정 배급에 대한 건의문 발송 경과보고

5. 목포어판소 부정사건에 관한 진상조사 결과보고

6. 내무위원회 회의록 상황보고

7. 행정구역 개편 추진위원회 및 동정 운영 위원회 연석회의 결과보고

8. 진정서 보고

9. 제5회 시정감사 처리 전말보고

5. 부의안건 :

1. 시의회 의원비용 변상조례 일부 개정안

6. 개의선언 : 의장(오전 10시 30분)

※ 의장 : 남북통일로 기어 전취하여야 할 기미신년에 제하여 의원 각위의 멸사봉공으로 13만 시민의 복리의 증진을 제래할 것을 굳게 맺는 바이며, 모든 창의력과 계획성있는 추진으로 시건설에 이바지하실 것으로 믿는다 라는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 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언함

※ 의사일정에 따라 전차 회의록을 낭독

◇ 박찬대 서기

- 회의록 낭독

◇ 의장

- 일부 방청석의 소요함을 제지

◇ 진복춘 의원

- 거반 발언내용의 재 낭독을 하여 주시오.

◇ 박찬대 서기

- 이업조합에 자금이 없어서(이하 약)을 낭독

◇ 진복춘 의원

- 발언 내용에 오기가 있으므로 정정을 요합니다.

즉 어린이의 부당 이득의 착취가 허다하다 하니 어린이위판소에서 가지고 있는 이하 동의로 하고 「앞으로 공공단체를 말소시키고 사설 객주를 육성하기 위하여」를 삭제하여 주기 바람

◇ 박찬대 서기

- 정정하여 제차 낭독

◇ 의장

- 이의가 없으면 통과하겠음

◇ 김삼성 의원

- 회의록 작성의 정확을 위하여 앞으로 속기사를 채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 속기사 채용에 있어 김삼성의원으로서 부터 동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재청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의가 성립 되었으므로 가부를 묻겠습니다.

전원 거수 찬동 채택기로 가결

◇ 손백수 의원

- 시정 감사서를 내용이 망각 되었으므로 과반 행정부에 제출하였던 서류를 반환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 김삼성 의원

- 시정 감사 내용에 질의가 있었는데 아직 행정부와 질의가 미종료니 서류를 다시 봐야 하겠다.

◇ 이소규 의원

- 시정 감사에 대한 질의는 끝나고다만 행정부의 답변이 안 끝났다는 요지의 설명이 있었음

◇ 이문길 의원

- 이제사 서류 반환을 요구하여 다시 연구해서 의사진행을 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니 서류보고 전하면 본인이 사무당국에 가서 보고 그대로 의회를 진행할 것을 개의

◇ 진복춘 의원

- 의회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사일정에 기재된 것이니 그대로 일정에 의하여 진행키로 재 개의

◇ 김삼성 의원

- 찬동
(재청)

◇ 이복주 의원

- 재 개의에 반대한다.

의회가 지연되어 지방전과 전설을 위하여 질의를 한것인데 그후 3개월이 되어 공이론화 되고 만 것이다. 지방행정은 의회정치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 오랫동안 개회를 안한 분위기는 장, 의장이 너무 독선적이라 생각한다. 일정을 변경시켜 시정감사 보고를 먼저 할 것을 동의에 첨가
(동의집 수락)

◇ 의장

- 표결에 부침
재 개의 8명 찬동이므로 가결 통과

※ 의사일정에 이어

◇ 박찬대 서기

- 이충무공 동산 건립 후보지 유치에 관한 건의문 발송 결과보고 및 군경 원호회 목포시지부 운영에 관한 건의문 발송 결과보고 낭독

◇ 의장

- 다음 사료적정 배급에 대한 건의문 발송결과 보고의 낭독 있겠음

◇ 박찬대 서기

- 전문 낭독

◇ 의장

- 다음 목포 어판소 부정사건에 관하여 진상조사 결과보고의 낭독있겠음

◇ 박찬대 서기

- 전문 낭독

◇ 의장

- 본 건 그 당시 조사위원의 한 사람이었던 이소규의원으로 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소규 의원

- 부정 사실에 대하여 직접 처리 권한은 없다. 다만 사법당국에서 조사에 착수한 것이나 당책임자 수산계장으로 부터의 말에 의하면 죄목이라 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이며, 아무런 증거도 없고 수산물 취급자를 어상조합으로 조직케 하고 위탁 판매업을 대행케 한다 한 것은 수산법규가 살아있는 한 도저히 불가능하며, 진정 내용의 3, 4, 5, 6항 타도의 방법도 알아 봐서 선처하겠다는 수산과장의 언명이 있었음

◇ 의장

- 내무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회의록 결과보고 낭독이 있겠음

◇ 박찬대 서기

- 전문 낭독

◇ 이문길 의원

- 특별위원회의 명칭이 부당하니 「특별」이란 2자를 삭제할 것을 제안

◇ 의장

- 동 제안에 대하여 서기로 하여금 「특별」을 삭제 시키겠음

◇ 의장

- 죽교동 3구동 일부 주민들로부터 들어온 진정서는 의회 채택 안겠습니다.

◇ 정응균 의원

- 소개의원이 엄연히 있고 의사일정에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택안겠다 함은 모순이 되지 않는가?

◇ 박찬대 서기

- 전문 낭독

◇ 이문길 의원

- 본 건 조사위원 4명을 구성하여 연구케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지명은 의장에게 일임)

◇ 이복주 의원

- 동의에 재청

◇ 정응균 의원

- 진정 내용의 해당 지목 및 거주민의 세공충으로 인한 구매력 불능상태를 설명한 후 우리 의원은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정확한 기초자료를 파악하여 공명정대한 판결이 있도록 관계 당국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문길의원 동의에 찬동

◇ 이소규 의원

- 본 건은 재 이의신청중에 있으니 타지주 및 사유지 임대료 관계 등을 조사하여 지주인 강대진씨 의견도 타진하여 재판관에게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도록 동의에 참가
(동의자 수락)

◇ 의장

- 표결하겠음

만장 일치로 가결

전원 가결이므로 4위원은 그 구역출신자 의원을 지명

◇ 김영완 의원

- 근로동원법이 생기기 전에는 노무동원을 경찰서에서 하고 법이 생긴 후 시에서 시행하여 나왔는데 거일 시장실에 7, 80명의 수가 살도하여 식량을 요구한 것을 봤다. 목포에서 367명이 일선 노무자로 있는 수다. 그 가족의 임금 지불 상황은 작년 5월부터 미급중이니 이 사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전남에 2, 800, 000환이란 배당이 왔다 하니 시로는 아무런 지시가 없는가? 오늘이라도 도와 절충을 하여 빨리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이 지방의 실정을 중앙에 호소하여 노무자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건의문을 낼 것을 긴급 동의 한다.

◇ 의장

- 일선 노무자 및 제대자 가족들은 현재 사경에 있다. 위임장을 받고도 임금 지급이 없으니 의아심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본 의원도 김의원의 긴급 동의에 찬성한다. 아울러 대통령각하에게도 건의문을 발송할 것을 동의에 첨가

◇ 이소규 의원

- 우선 주무 책임자로부터 말을 들어보자

◇ 윤주현 사회과장

- 1일 평균 4, 5회 이상 인편 혹은 전화로 연락을 한다.

한달 전 작년 9월까지의 임금이 도에 왔다 하여 개인의 위임장을 받았는데 작일 노동계장을 상도케 하여 임금 수령차 급속 보냈으니 해결될 것이다.

◇ 김영완 의원

- 신문에 노무자 가족이 이사하였다 한데 이 사실에 앞으로 충궁기를 앞두고 대책 여하

◇ 윤주현 사회과장

- 아사자가 아니고 신병으로 사망한 것이며, 각 반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아사자가 없도록 하겠음

◇ 김삼성 의원

- 사회과장에게 문의하였던 임금 지급에 있어서 미군 지출과 정부 지출이 액면 차이는 여하?

◇ 윤주현 사회과장

- 미군 45환은 현장에서 매일 정확히 지불되고 있으며, 55환은 정부 지출이다.

◇ 김영완 의원

- 현재 통장으로 기준하여 배급함은 부당하니 앞으로 적정 배급대책 여하?

◇ 윤주현 사회과장

- 통장으로 실시 안하고 (1, 2, 3월분) 현재 조사중에 있다.

◇ 의장

-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김영완의원의 동의에 만장일치로 가결

◇ 의장

- 2시에 속회를 선언하고 12시 50분 휴회를 선언

※ 건의문 발송선 : 대통령각하, 보건사회부장관, 재무부장관, 도지사

(오후)

◇ 의장

- 오후 2시 속회를 선언함과 동시에 사회를 이부의장과 교체함

◇ 부의장

- 시정감가 결과에 대하여 행정부의 답변이 있겠음

◇ 진복춘 의원

- 해무부 유치운동 관계로 시장이 상경하여 왔는데 서광이 있다.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사범대학, 이충무공, 산업은행 등등 단급 건의문 발송에 끝이고 용두사미격으로 유종의 미를 거둬지 못했다. 미곡, 면화의 집산지며 어항 목포항으로는 절대적 유리하니 거시적으로 활동을 하여 무안, 강진, 진도, 해남 각지에 가서 진정서를 날인을 받아 진정한 것이니 중앙에다 전라도 출신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적극적 운동자로 하고 목포서는 시장 및 우리가 중심으로 되어 강력한 운동을 전개하기로 긴급 동의한다.

◇ 김삼성 의원

- 여사한 중요한 유운동에 시의원이 모르고 있었던 것은 수치다.
거시적 운동이며 현재까지 본 의원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니 만큼 소극적 분위기라 아니할 수 없다.
전 시민 연판장동 필요한 것 이러니와 본 의원은 전연 모르는 의원의 해남 등지 출장의 명령은 누가 하였는가?

◇ 부의장

- 상공회의소의 주동으로 되어 있는데 해무청을 여수서 유치운동이 격렬하다한 급한 통지가 서울서 왔다.
그리하여 전정서 관계로 시의회서 4명을 파견키로 결의가 되어 시일이 급한 관계로 의장이 명령 그리한 것이다.

◇ 정응균 의원

- 목포시의 건설 발전을 위해서는 항시 우리들은 모든 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해무청 유치관계는 목포일보사 지면에도 기재된바 있고 의장, 이 책임을 가진 것 보다 우리 스스로가 목포시 건설을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일이다.

◇ 이복주 의원

- 상경하여 수고한 줄 안다.
언제나 행정부와 의결부는 혼연일체가 되어 나가야 한다.

여사 중대 문제에 회의도 없고, 의장의 독선적인 점에 대하여 답변 여하

◇ 의장

- 비용 염출관계로 해무청과 근근한 기관에서 하고 공개적으로 적극성을 뛰어서 하면 진동서 알게 되니 유치운동 하기에 지장이 생길 것 같아서 한 것인데 책임을 지라고 추궁하면 입장이 곤란하다.

◇ 김삼성 의원

- 목포시사 어촌화 하느냐 혹은 활기 있는 항구를 건설 하느냐는 중대사에 소극적 활동은 부당하다.

◇ 진복춘 의원

- 그 당시 사정으로 인하여 소집 요유가 없었으며, 의장에게 책임 추궁은 부당카고 생각함

◇ 이복주 의원

- 모든 출장에 있어 의장이 독선적 처사는 부당하다.

◇ 부의장

- 각 의원의 의사를 듣고져 돌아 다닐 수 없고 다만 말하는대로(무의미하게)의원에게 어디 어디로 출장조가 주시라고 말한 것이니 거기에 별다른 생각 가지고 한 것은 없다.

◇ 손백수 의원

- 13만 시민의 발전을 기하려면 합심 협력하여 이러한 기회를 가져 의견을 종합하여야 하며, 해무청 유치 문제도 거시적으로 총 쫓기하여야 한다.

◇ 부의장

- 시장님에게 교섭 전말을 듣기로 함

◇ 하동현 시장

- 당시의 실정을 호소하여 각부장관, 전라도 출신 국회의원과 협력 활동

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음

◇ 이복주 의원

- 해무청 유치 운동 동의에 찬동은 하나 이제와서 결의한다 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 부의장

- 17일 요구서도 왔으나 부의안건도 없고 해무청 관계로 지방으로 의원들이 출장이 생기고 의회를 소집할 수가 없어서 지당 귀목후 소집기로 한 것이다.

◇ 부의장

- 의원 긴급 동의에 말씀 있기 바람

◇ 김삼성 의원

- 본건에 대하여 총 쫓기하여 6인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인 위원으로 하여금 우리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적재적소의 부서에 담당케 함은 물론 전자 이 운동에 수고하신 분은 물론 유위유능한 인사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자 개의

(재청)

◇ 부의장

1. 국회의원을 상치하여 중앙에서 활약케 함
2. 6인의 위원회로 하여금 각 의원에게 각 부서 담당케 하고
3. 재정관계는 차후 염출 방침을 구성하고
위 항목의 동의에 표결 하겠음
가 6명으로 본안 폐기

◇ 진복주 의원

- 폐기 되어서는 수치다.

◇ 손백수 의원

- 폐기는 애석하므로 7인으로 구성케 동의

◇ 부의장

- 1사를 재개의의 원칙으로 부당을 지적

◇ 김삼성 의원

- 수에 오산이 있으므로 재차 수를 세기를 바람

◇ 김영완 의원

- 진정서에는 추진위원회로 되었는데 단금 날인뿐이다.

◇ 이복주 의원

- 시의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타 단체에 영향은 여하?

◇ 부의장

- 날인자 들에게서 많은 협조가 있는 것이다.

◇ 정응균 의원

- 추진위원회 구성키로 김삼성의원외 폐기 개의 번안 동의
(재청)

◇ 부의장

- 재청이 성립 되었음

6인 위원은 4분과 위원장, 의장, 부의장을 지명

※ 의원 퇴장

◇ 김자홍 의원

- 첫째, 의정 단상에서 왈가왈부 시비를 따져 흑백을 논란하여 행정부의 일거일동을 백일하에 노정하느니 보다 공보다는 책한 점이 많은 자치행정의 초창기에 있어서 그를 우리끼리 내부에서 서로가 권하고, 충고하고, 잘못은 바로 잡아서 착실하게 함으로써 자손만대에 자랑하며 넘겨줄 보람있는 자치

행정을 완성하고자.

둘째로는 항상 존경하여 마지않는 고매하신 능숙하고도 탁월한 행정 수완과 그 고결한 인격으로써 우리가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점을 충분히 실현하여 주신것을 믿기 때문에 단상에서 여러가지 발언을 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호사다마요, 폭풍과 눈보라를 겪지 않는 온돌의 꽃이 한번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 그들이 견디지 못할 것이며, 우물안에 사는 개구리가 대해의 광란함을 알지 못하는 격으로 내가 숨기고 안으로 우리끼리 단락하게 해결코져 하는 나의 태도에 행정부에서는 자기의 과오를 뉘우치지 않고 과오에 비위를 더하여 이대로 방치한다면 시민에게 불안과 불행을 갖아온 것은 명야관화한 사실이다.

개진코져 함은 고를의 각종 시세를 감수 납세한 목포시민의 중대하고도 관심있는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확신하오며, 현재까지 동문서답격인 피상적인 책임전가하는 누습을 떠나 진신한 책임있는 태도와 목포시의 복지행정을 담당하시는 목민관으로서 도의와 정도에 입각한 행동을 가짐으로써 전체 시민과 호흡을 같이하고 시민의 시청이 되어 혼연일체, 향토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가져오는 민주 전당이 이 고장에서 출현하고 발전해야 하겠다는 나의 굳은 신념으로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의 책임을 묻고져 하다.

1. 감사보고 당시 소방대사는 시비에서 지출하여 불하 명의를 소방서장 명의로 한 것은 그후 아직까지 명의 변경을 안한 것은 시장의 무능을 폭로한 것이 아닌가?
2. 시 쫓차 200, 000환에 매도될 것을 150, 000환에 매도 처분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키 바람
3. 북교 4구동 석계단 공사에 있어서 당초 당국의 착공에 있어서 대당한 관심을 가진 것이나 그 결과로서 흙을 혼동하여 손으로도 파괴된 현상에 비추어 고액의 예산만 도리어 손실만 초래케한 이유 여하?
4. 삼학도 공사의 경비가 4, 500만환을 들었는데 절충관계가 어쩐지 정부예산에 삭제 되었다는데 차에 대한 답변?
5. 수도 급수관계에 있어 저수량 부족으로 인한 타개책 여차?
6. 수도 시설은 좋으나 정실적면이 보이고 C. A. C 물자를 무상으로 얻어다 수도 시설료를 2백만환씩 유로로 한 이유 여하?
7. 국채 소화에 있어 제2화 국채는 현금화 되고 있는 현재 아직까지 국채

사건이 결말을 못보고 있는데 그 해결책에 방안이 없는가?

본 건은 성적이 대단히 부진하다. 시장으로서는 국채 사건 발언후 1개의 사과도 없고 막연함은 무책임한 처사다.

8. 현하 각 동은 건물의 부패상태에 있는데 무슨 이유로 3구동에 한해서만 세멘트 특배를 하였는가?

◇ 건설과장

1. 석계단 공사로써 작년 12월 19일 착공한 것인데 2단계로 우선 나누어서 1단계를 시험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업자와 합의하에 대금은 아직 지불되지 않고 있다.

2. 아스팔트는 예산 관계로 파괴된 분만 수리하고 있으며, 목포는 철차량이 많은 고로 도로도 많이 파괴당하며, 또 작년 수리분은 아직 파손되지 안했을 것이다.

3. 배수량에 있어서는 40미리 강우량이 아직 없어 대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4. C. A. C 물자를 무료로 받아 유상으로 수도 신설료를 받는 것은 전제 조건이 그러콤 되어서 유료로 한 것입니다.

◇ 총무과장

1. 소방대사 건에 대해서는 당초 시비로 지출한 것이고 당연히 시장 명의로 되어야 한 것이 지당하나 그 당시 적산이라 소방서장과 합의하에 시장명의로 변경한 것을 당국에 서류 제출코 취득 중임

2. 국채 문제에 있어서는 수차에 걸쳐 연락중이며, 거반 광주시 시정계 직원 (그당시 관련자)과 연락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반환토록 하겠다.

◇ 시장

1. 찢차에 대해서 육해공군 합동 취체위원이 대구에서 내려와 사용 불능하다 하므로 경비부와 타협하여 보간해 두었는데 그후 외세가 전하므로 선의책으로 경비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150, 000환에 매도한 것이다.

2. 삼학도 공사는 항망과장도 언명한바 있고 정부예산에 편성되고 있다.

3. 북교 3구동의 세멘트 재급은 아직 안준 것이다.

◇ 부의장

- 죽교 3구동 사무소의 석조 건물은 고 문명호씨의 기증이다.
현재 수리비 염출 관계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수리비를 계산한 결과 시
에서 세멘트 10대포는 보조해 주어야 하겠다.

◇ 김삼성 의원

1. 찢차 매각에 대해서 급사가 서면 결재를 득한다는 것은 사건의 중요성○
에 부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한데 여기에 대한 답변 여하?
2. 제2회 국채의 미결은 시민의 불안감을 가지게 한다.
3. 아스팔트는 여심 우기에 착공할 필요가 나변에 있는가? 좋은날을 선택해
서 착공해야 할 것이다.

◇ 부의장

- 중대한 문제를 급사에게 돌려선준 안될 것이다.

◇ 총무과장

- 시일 관계로 분과별로 돌린 것이다.

◇ 손백수 의원

1. 도선장 관계로 선임을 인상하여도 종전과 여히 실정은 같으니 이유 여
하?
- 2 양곡대만 지불하면 양곡을 준다하니 기타 미납금을 납부해야 준다고 돌려
보낸 이유 여하?
3. 도민중 교부 신청시에 국채를 첨가 소화시킨 사유 여하?
4. 도서관 한국간행물을 3, 40만환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 시민의 기대에 알
맞게 호흡을 같이할 수 있는가?
5. 사료에 대해서 물의가 자자한데 진상을 밝히고져 감사반을 조직할 것을
동의

(재청)

(지명은 의장에게 일임)

◇ 이복주 의원

- 축산조합장으로 있는 관계상 진상을 보고하고 반면에 행정부의 답변을
얻고자 함. 3, 000가마의 맥강을 수배 하였던 400여건의 신청 서류를 접수하

여 구신 316건을 처리하였다.

시에서는 양돈 금지 구역에 까지 배급을 했으나 이러한 것은 안되며, 신문 지상에 시의원 문제가 난 것이나 우리 의원이 양동한 것이 사실이므로 배급한 것이며, 홍익선 도의원 400가마, 김영완의원 300가마씩 수배 사실이 있다.

그러나 산업과 착오로 인하여 재고량의 부족을 초래케 하여 항간 여론의 도화선이 되어 사료의 부족이 생한 것이다.

※ 의원 퇴석

(오후 4시 10분)

◇ 김영완 의원

- 이의원 발언 내용에 있어 취소를 바람.

김영완이가 아닐 김영길의원로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 김삼성 의원

- 사료 관계로 불명예스러운 기사가 났을 때 의회를 소집하여 사전 수습을 못 했는가?과거의 총무과의 국채 사건에 시민은 신경이 극도로 예민하여 비난이 많다. 우리는 지역적으로 계몽운동을 하여야 된다. 의회가 중심으로 되어 민주정치를 발전시켜 의회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 의장

- 의원의 동의를 표결하겠습니다.

찬성 6, 부 5

가결

5인위원으로 지명

※ 의원 입장

(오후 5시)

◇ 건설과장

- 휘발유 관계로 저하 되는데 최근에는 오르고 있다.

◇ 박찬대 서기

- 동직원 양고데에 있어 미납금 빙수한 예가 없다.

◇ 정응균 의원

- 급사의 보수에 대하여 대책은 없는가?

◇ 총무과장

- 봉급 정도를 고려 하겠음

◇ 손백수 의원

- 도민중 교부시 국채 첨가 소화 사식을 제시하였음.

◇ 총무과장

- 동을 경유한 것이면 평면 소화책임자에 대한 소화임을 설명

◇ 김자홍 의원

- 국채 소화직원이 불친절하다.

◇ 김삼성 의원

- 의무교육에 있어 국채 소화시요는 문맹 장려가 아닌가?

◇ 총무과장

- 관계 총리의 통첩에 의한 것이다.

◇ 정응균 의원

- 도서관의 환경 정리와 한국간행물 구입에 발언 있었음

◇ 손백수 의원

- 우리 의원 일당 1일분을 도서구입비로 제공 하였음은 좋겠다는 요지 발언이 있었음. 도서 구입비가 40여만원 든다던데 점차적으로 개정 예산이라도 세워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 김삼성 의원

- 미진 사항이 많으므로 명일로 속열할 것을 긴급 동의
(재청)

◇ 본 건 표결하겠습니다

가 8,
가결

◇ 의장

-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오후 5시 5분)

◇ 의장

- 회의록 서명 의원에 김삼성의원을 지명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이 서명 날인함

1955(4288)년 3월
3일

과장 : 박 찬 규

의원 : 김 자 흥

의원 : 김 삼 성

작성자 서기 : 홍 남 식

제33회 임시회 목포시의회본회의회의록(제 2 차)

1. 일 시 : 1955(4288)년 3월 4일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의성립 :

1. 참석의원 : 12명

2. 불참의원 : 9명

※ 1955(4288)년 3월 3일 의사일정에 의하여 속열

◇ 부의장

- 속회를 선언(오전 11시 5분)

◇ 김영완 의원

- 제기되어 있는 수도관이 파괴되면 준비 대책은 여하?

◇ 건설과장

- 시설 자재는 없다.

한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당무자도 대단히 걱정거리가 된다.

대구서 얻어오기로 불일내 영어 번역하여 신청 계획이다.

자금 관계도 곤란하다.1

◇ 김영완 의원

- 본 건 자금이 없다하나 시장은 이점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전당포 운영 상황도 광주는 천만환의 용자로 활기가 있는데 당 목포의 진상은 어떠한가?

◇ 시장

- 대구여비를 염출하겠다.

전당포 관계로는 광주를 중률 이상 상대로서 금패물을 입질하고 목포는 이러한 것은 취급 안했다.

정부에 자금조달 신청을 하겠다.

◇ 이문길 의원

- 선창에 상방을 철거하였는데 그 후 내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건축 허가한 사실과 건축설계 대서를 시에서 했던 것이 사실인가?

◇ 건설과장

- 대충 건물은 철거 당시 약속을 한 것이고 건축 설계는 갑종기술 졸업자면 설계할 수 있다.

◇ 정응균 의원

- 완전 허가가 아닐 것이며, 관에서 철거 하라면 철거처럼 되어 가지고 있을 것이다.

공동 변소에 대한 청소 안부를 전속으로 배치한 것, 해수욕장의 사를 추력으로 운반해 가는데 감사 계획은 없는가?

◇ 사회과장

- 청소 인부는 배치하겠다.

◇ 건설과장

- 즉시 조사 착수하겠다!

◇ 진복춘 의원

- 시장 취임 당시 도로에 대한 소신 피력이 있었는데 우리도 여기에는 호응하겠다. 그런데 현재의 치도대책에 대하여서는 시민의 원성만 자자한데 이에대한 대책여하?

◇ 건설과장

- 도비 보조 400, 000환은 아직 미도착이며, 시내 3개소

1. 시장부터 불조에
2. 동아부인상회부터 환성
3. 시장 이면과 국도는 미착수이며,
1, 2에 대해서는 착공중임

◇ 김영완 의원

- 시민의 부담이 과중한 차제에 현재 예산으로 보면 시작원 1인당 봉급을 15,000환 계산하고 있는데 이러 하려는 시세가 100분지 150으로 나 된 것이니 이에 대한 대책 여하?

◇ 재무과장

- 현 호별세 부과에 있어서도 업자의 전 소득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 아니며, 도의 배시액에 의거하여 최소한도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시세 세를 인상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문제다.

◇ 정응균 의원

- 서부교의 수도 실정은 극히 비참한 상태이다.
또 시민의 절수 사상이 희박하므로 이에 대한 강구책은?

◇ 건설과장

- 서부교는 수압 관계도 있으며, 앞으로 송수관 관계를 연구하여 편리를 도모하겠다. 수도에는 계량기 사용이 원칙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입수로한 관계로 곤란한 점이 많다.

◇ 진복춘 의원

- 제2, 제3학호를 구입하여 왔는데 구랑크가 파손되어 사용 불능이므로 아주 시민의 원성이 높다. 이에 대해서 건설과장의 답변을 바란다.

※ 오전 12시 30분 의원 입석

◇ 김영완 의원

- 본건에 대하여는 실지를 조사해봐야 될 일이므로 3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하여 차기 의회에 보고기로 동의

(재청)

(위원 지명은 의장에게 일임)

◇ 부의장

- 표결하겠음
만장 일치로 가결
위원으로 의원을 지명

◇ 김남진 의원

- 역전 하수구는 도로점용 사용 허가에 있어서 거반 시장으로부터 찬동여부의 회람이 왔는데 이는 시장의 권한내에 있으므로 의원들의 찬부는 들을 필요가 없다.

◇ 김경현 의원

- 시의 초점인 역전에다가 또 상방을 철거시킨 요즈음 누구들에게 욕을 먹으려고 GJ허가를 했던 말인가?
이것은 도저히 부당하다

◇ 김남진 의원

- 행정부 조치면에 비추어 건축 법규내서 허가 한다던지 허가 안한다던지 시장에게 일임토록 동의

◇ 부의장

- 본건 대다수 의원이 불찬이므로 허가 안하는 것이 좋다.

◇ 정응균 의원

- 사회부장관의 보증 있는자를 노무자로 보낼 수 있는 것인가?
또 국채소화가 마필이라하여 의무자 회사측에 소화할 국채를 소화 안했다고 해서 종사하는 노무원을 노무자로 보낼 수 있는 것인가?
부시장의 답변을 바랍

◇ 부시장

- 보류증은 갱신 관계로 다시 회수한 것이며, 본 노무자는 종전부터 기피자였던 것이다.

앞으로 보류증 소유자에 대해서는 안보내겠다.

◇ 부의장

- 대정부 질의응답과 제5회 시전감사 처리전말 보고에 있어서는 이 이상 각 의원의말씀이 있는 것 같으니 본 건은 이것으로 종결 지겠습니다.

◇ 부의장

- 지방자치법 개정안 요리에 대한 건의문 발송에 대하여 진주시 의회부터 진정서 내용이 왔기에 보고해 드립니다.

(본 건 축조설명이 있었음)

본 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있기 바람

◇ 정응균 의원

- 세밀히 검토한 후 본 회의에서 결의하여 우리 의회의 태도를 결정한 것이 좋겠다.

◇ 이재홍 의원

- 본 개정안에 대한 건의문 내용은 동일하여야 됨은 물론 시일이 급하므로 작성해서 이 자리에서 건의문을 보낼 것을 동의

(건의문 작성은 사무 당국에 일임)

(재청)

◇ 부의장

- 대구시에서 개최된 각 시도읍면장 회의 결과에 대해서 언약 관계를 설명

◇ 부의장

- 3월 10일 이내로 본 도의회 건의문 내용을 참작하여 국회의장, 내무위원장, 법사위원장에게 발송키로 동의집에 첨가

◇ 부의장

- 표결하겠습니다.
전원 가결

◇ 부의장

-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들어갑니다.
- 1. 시의회 의원 비용변상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 하겠음
- 2. 행정부로부터 제안 이유 설명 하기 바람

◇ 박찬대 시정계장

- 제안 이유 설명(별지)

◇ 정응균 의원

- 본 건 1, 2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 할 것을 동의
(재청)

◇ 부의장

-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 하겠음
전원 가결

◇ 폐회선언 : 의자

(오후 1시 8분)

◇ 폐 회 식 : 식순 생략

◇ 폐 회 사

- 의장(현정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 간부간의 융화를 도모할 것이며, 의원 각위께서는 항상 집행부와 상호 밀접한 관계를 지속하며, 13만 시민의 복리를 6월말에 할 것이며, 각 의원께서는 시장이 안도감을 가지고 그 직책을 완수할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 있기를 바란다. 필요성을 역설

◇ 의장

- 회의록 서명 의원에 의원을 지명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이 서명 날인함

1955(4288)년 3월 6일

과장 : 박 찬 규

의원 : 김 영 완

의원 : 김 자 흥

작성자 서기 : 홍 남 식